

美國·英國·日本의 電氣通信政策動向

政策研究室 主任研究員 韓 壽 龍

目次

- I. 序 論
- II. 美國의 自由化 動向
- III. 英國의 民營化 및 自由化 動向
- IV. 日本의 民營化 및 自由化 動向
- V. 結 論

I. 序 論

정부는 작년에 7개 완전매각 대상기관, 3개의 일부매각기관, 7개의 기능조정기관으로 나누어 공기업 민營化 방침을 결정한 바 있다. 이러한 결정속에 電氣通信公社(KTA)의 민營化도 포함되어 있어 89년도에 민營化가 추진될 예정으로 있다. 이러한 KTA의 민營化가 결정된 시기에 선진국의 電氣通信分野에 있어서의 민營化 및 自由化 동향을 주의 깊게 고찰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電氣通信分野에 自由化와 競爭原理를 도입하는 움직임은 美國을 선두로 하여 英國, 日本에서 활발히 진행되어 왔으며, 1980년대 후반에 들어와 세계 각국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여기서는 美國, 英國, 日本을 중심으로 電氣通信分野에 어떻게 競爭原理, 自由化 및 민營化가 진행되어 왔는가를 서술함으로써 일반적으로 민營化, 自由化 과정속에 競爭原理와 규제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를 고찰하고자 한다.

한편, 美國, 英國, 日本에 있어서 민營化 및 自由化가 진행되어진 背景, 基本政策方向, 主要政策內容에 대해서는 본 연구원의 <연구보고 87-13>¹⁾에 잘 나타나 있으므로 본 稿에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II. 美國의 自由化 動向

美國 電氣通信政策의 기본적 이념

은 市場原理에 입각한 競爭促進과 自由化이다. 美國의 電氣通信產業은 탄생초기부터 거의 일관하여 민간기업에 의해 運營되어 왔으며 이점에 있어서, 國家獨占을 전제로 하는 유럽형의 電氣通信事業과는 현저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美國에 있어서도 1960년대에 이르기까지는 競爭의 결과, 성립한 自然獨占이 인정되었고, 電氣通信事業은 獨占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포괄적인 규제가 되어 왔다. 이러한 規制下의 獨占體制의 개혁은 50년대말에 시작되는데 당초는 매우 완만한 속도로 출발하여 70년대부터 80년대에 걸쳐 빠르게 진행되었다.

특히, 컴퓨터이용의 普及과 電氣通信과의 융합이 진전됨에 따라 양자를 규율하는 政策原理의 필요성이 지적되어 3차에 걸친 컴퓨터조사제정으로 政策的 구조가 변화해 왔다. 이러한 재정들의 목적은 컴퓨터를 포함하는 電氣通信技術의 발전과 電氣通信에 대한 社會的 需要의 다양화, 고도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競爭的 環境을 창출하는데 있었다.

美國의 電氣通信政策을 參입장벽의 완화라는 관점에서 고찰하면 다음과 같이 1934년 통신법제정과 AT&T 분할의 전후시기로 나누어 논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表 1>은 주요한 電氣通信自由化政策의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1. 1934年 通信法 制定

1950년대 중엽이전까지 電氣通信政策의 변천에는 많은 발전단계가 보여지고 있으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1934년의 通信法(The Communication Act of 1934)의 제정과 聯邦通信委員會(FCC)의 설립이다. 왜냐하면 동법에 의해 電氣通信事業의 자연적 독점성이 법적으로 확인되고 電信事業에 있어서 Western Union의 자연적 독점 및 電話事業에 있어서 Bell·System과 獨立係 電話會社와의 협조체제에 의한 지역적 獨占이 성립하는 기반이 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이 법률에는 競爭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강조하지 않았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와 같은 경향은 FCC 및 각주의 公益企業委員會가 취한 參입장벽의 緩和에 관한 엄격하고 일관된 政策에서도 보여지고 있다. 즉, 신규참여를 하고자 하는 자는 ① 현행의 서비스가 불충분 또는 비효율적인 것, ②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신규참여가 적절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요구되고, ③ 확고한 자금적 기반 및 ④ 참여에 적절하고 충분한 수요의 존재를 보증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일층 강화되어 강력한 참여에 대한 장벽이 되었다.

2. AT&T 分割以前 自由化

1950년대에 들어와 AT&T의 競爭者가 새로이 출현하기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1950년대 이후 AT&T 분할 이전까지 美國에 있어서

註
1) 吳聖伯, 「英國 및 日本의 電氣通信事業 民營化 事例 調査研究」, 通信政策研究 所, 1987. 12.

〈表 1〉 미국의 주요한 전기통신 자유화정책 추이

년도	정 책	내 용
1959	Above 890 재정	- 890 MHz 이상의 주파수를 사 설시스템용으로 개방
1968	Carterfone 재정	- 공중망에 접속하는 단말기기의 사설을 허가
1969	MCI 재정	- 전용선 분야에 대한 경쟁도입
1971	제 1차 Computer 조 사재정	- 통신과 정보처리의 2분법, 통 신은 규제, 정보처리는 비규제 화
1972	Open · Sky · Policy 의 채택	- 국내위성분야에 대한 경쟁도입
1973	PCI 재정	- 통신회선의 재판매에 의한 VAN Service 의 허가
1974	상호접속명령	- AT&T 와 특수통신사업자 MCI 등과의 상호접속 명령
1980	MTS / WATS 재 판매 · 공동사용재정	- 국내장거리전화 Service 의 재 판매 · 공동사용의 허가
1980	제 2차 Computer 조 사재정	- 기본 Service 와 고도 Service 의 2분법, 고도 Service 와 고 객택내기기의 비규제화, 단, AT&T 는 자회사에 의함.
1981	기록통신사업자 경쟁 법의 재정	- 기록통신분야에 있어 국제와 국내의 2분법 폐지
1981	Transborder Service 재정	- 국내위성에 의한 인접국가와의 국제통신 Service 제공의 허 가
1982	TAT -4 재정의 폐 지	- 음성과 기록통신 Service 의 2 분법 폐지
1982	트랜스폰더판매 재정	- 국내위성의 트랜스폰더판매의 비규제화

< 表 1 > 의 계속

1982년	반 트러스트법 동의판결	- AT&T 의 분할 (1984년 실시), BOC 의 업무분야 제한 등을 결정
1982~7	Access · Charge 재정	- 장거리분야에서의 경쟁촉진 : 새로운 상호접속 Pule 의 확립
1984	인텔샷트계 지구국의 소유권 재정	- 지구국 소유의 규제완화
1985	비인텔샷트계 국제위성 System 에 대한 조건부허가	
1985	사설의 대륙간 해저 광 Cable 에 대한 허가부여	
1985	AT&T 에 대한 단말 기기제공에 관계된 자회사분리요건의 폐지	
1986	RPOA , IRU , DNIC 재정	- 고도 Service 사업자에 대한 RPOA 부여, IRU 취득 등의 허가
1986~7	제 3차 Computer 조사재정	- AT&T 에 대한 규제완화 · 경쟁촉진 · 87년에 「추가규칙」을 채택
1986	BOC 에 대한 단말기 기제공에 관계된 자회사분리요건의 폐지	
1987	1982년 동의판결의 수정결정	- BOC 의 업무분야제한을 일부 해제하고 대부분을 존속

電氣通信政策의 競爭的 要素 도입에 관한 일련의 政策을 시기적인 순서에 따라 살펴보고자 한다.

1) Hush - A - Phone 判決 (1956년)

AT&T는 원칙적으로 자연적 獨占에 대해 최대한 넓은 정의를 채택하고, 어떤 地方獨立系電話會社와의 접속도 거부하였다. 한편, 獨立系電話會社는 그들의 시설과 사설마이크로웨이브시스템과의 상호접속을 일반적으로 인정한 것에 반해, 벨·시스템은 이점에서도 아주 특수한 사정(예를 들면 생명과 재산의 안전에 대한 침해 등)이 아니고는 이것을 인정하는 태도를 취하지 않았다. 다른 기업에 의해 제조되어 이용자에 의해 장치되거나, 이용자가 소유하여 자기가 공급하는 시설과 기구에 관해서도, 벨·시스템의 이러한 전반적인 방침을 굳게 지니고 있고 거의 이의를 제기할 여지까지도 허락하지 않았다. AT&T에 의해 장치된 이외의 어떤 시설, 용기, 회선, 배전반, 기타 일체의 부속시설도 AT&T의 시설에 결합 또는 접속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런 첫째의 전형이 Hush - A - Phone 장치²⁾에 대한 벨·시스템의 강경한 반대였다. 그 이유는 만약 전화 이용자가 이런 종류의 기구를 전화기에 자유로이 장치하고, 전화를 이용한다면 AT & T가 양질의 서비스를 보유하는 것은 지극히 곤란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다. FCC는 전화서비

스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근거로 벨·시스템의 주장을 지지하였다.

그러한 시기에 다음의 2가지 점에서 문제가 발생하였다.

첫째, 「規制下の 獨占」이라는 벨·시스템이 누리고 있는 상태는, 보다 개선된 서비스의 질적수준과 서비스의 다양성에 대한 부단한 열성적인 추구라는 점에서 보아 결과적으로 완전 무결한 것이었는가라는 반성이다. 이것을 매우 초보적인 수준이기는 하나 실증하여 보여준 것이 Hush - A - Phone 이다. 이 기구가 처음 나온 1921년부터 1949년까지 126,000개가 판매된 사실은 많은 전화이용자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였다.

둘째, 전화가입자에 의한 전화의 이용에 대해 얼마만큼 충분한 통제를 FCC가 가질 수 있는가이다. 비록 한쪽에 있어서 서비스의 질 개선이 다른 쪽의 서비스 질 저하를 가져 온다고 해도 그 마이너스분을 상회하는 가치를 그것이 갖고 있는 것인지를 결과적으로 누가 결정할 것인가하는 의문이다. 巡廻裁判所(Circuit Court of Appeals)는 이문제에 관계를 갖는 것은 통화의 당사자 뿐이라고 하여 FCC의 지지를 뒤집는 것이다.

이후 이 判決이 벨시스템에 대한 타기업이 제조, 판매한 시설 및 기구와의 접속을 얼마간 自由化하도록 작용을 하였다.

2) The Above 890 判決 (1959년)

註

2) Hush - A - Phone 라는 것은 Hush - A - Phone 이라는 독립계 전화회사에 의해 제조된 전화기 자체에 장치된 하나의 Cup 형의 부속기구이고, 이것을 본체에 장치함으로써 대화의 내용에 대한 Privacy 를 보호해 주고, 실내의 소음이 송화기에 들어가지 않게 하는 효과를 갖고 있다.

電氣通信의 통일적 전국망 확보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벨·시스템에 대한 최초의 중대한 도전은, 마이크로웨이브전송기술의 발달과 함께 표면화됐다. 당시 기술진보는 마이크로웨이브이용자가 자신의 시설을 설립하는 것(사설마이크로웨이브·시스템)을 가능하게 하였다. 더구나 마이크로웨이브의 비용은 공중통신업자의 당시 요금과 비교하여 상당히 낮다고 전망하고 있었으므로 FCC에 대해 인가를 요구하는 일이 많았고, 이런 현상은 마이크로웨이브 관련의 풍부한 시장개척을 기대하는 각종 전자기기 제조업자에 의해서도 강한 지지를 얻었다.

이에 대해 기존공중통신업자는 라디오전파의 Capacity에 한도가 존재하고, 電氣通信事業이 갖는 自然獨占性 때문에 전파는 기존업자에만 獨占的으로 부여되어야 할 것을 주장하고, 마이크로웨이브의 대규모이용자의 각자의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허용되어지면 전파의 혼란, 비용의 증가, 서비스수준의 저하 등이 발생한다고 역설하였다.

FCC는 自然獨占論據를 받아 들이고, 사설마이크로웨이브·시스템의 면허발행을 기존공중통신업자의 시설이 지금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신청자가 입증한 경우에 대해서만 인정하며 더우기 그러한 시설이 이용될 때 한하여 인정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설마이크로웨이브·시스템에 의한 마이크로웨이브통신분야에 참여의 自由化를 요구하는 압력은

1950년대를 통하여 일관하여 계속되고 결국은 Above-890判決에까지 이르렀다. 그것은 2지점간의 사설통신시스템의 필요성을 명시하는 것과 함께, 기존공중통신사업자 뿐만 아니고 사설마이크로웨이브시스템을 추가하여도 장래 주파수의 수요를 충분히 만족하는 890메가사이클을 초과하는 주파수에 여유가 있다고 결론 짓고, 통신기술의 발달을 촉진하는 것으로서 경쟁의 이익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은 FCC가 기존공중통신업자의 통신업무자체에까지 새로운 競爭을 인정할 용의가 있고, 무제한 競爭的 參與政策을 채용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면, 주파수의 공동이용을 요구하는 사설마이크로웨이브시스템의 신청을 FCC가 거부한 것에서도 명확하다. 이 경쟁적 參與政策을 자신의 개인적 수요를 만족한 것을 원하는 개개의 이용자에 대해서만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고 이런 점에서 한계를 갖고 있다.

3) Carterfone 判決 (1968년)

벨·시스템은 Hush-A-Phone 判決을 하나의 예외적 사례로서 취급하고, 그것을 될 수 있는 한 좁게 해석하여 상호접속에 대한 거부를 일반원칙으로하는 태도를 계속 취하였다. 그래서 새로운 비난의 대상은 1959년부터 1966년까지 사이에 약 3,500개의 Carterfone³⁾을 시판한 Carter Electronics Corporation으로 향하게 되었다.

註

3) Carterfone은 일반 전화와 가동식 라디오(Private Mobile Radio System)와의 사이에 쌍방향의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기기이며, 전화신호를 라디오를 매개로 하여 가동식라디오에 자동적으로 전달하고, 라디오에서 소리를 증폭하는 기능을 갖는다.

벨·시스템의 주장은 「네트워크는 전체로서 단일 시스템으로 보여지며 어느 미소한 부분이라 할지라도 다른 전부분에 미치는 영향이 계산되어 있는 것이며, 이런 시스템 사고원칙이 극히 일부분에서도 혼란되어지면 궁극적으로 전체로서의 효율성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하는 것이다. FCC는 이 기본원칙자체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할 여지가 없고, 벨·시스템이 서비스의 질적수준과 그것을 위한 모든 시설의 책임을 행사하여야 하는 것은 인정되어지나 Carterfone에 관해서는 그것이 전화사업전체 혹은 다른 사람의 전화이용에 대해서 어떠한 폐해를 주는 것이 없는한, 상호접속을 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그런 희망이 만족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취하였다. 그래서 전화사업자 자신에 의한 상호접속시설의 사용은 인정되고 있는데 반하여 Carterfone 등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하고 있는 당시의 요금제도는 불합리하고, Carterfone에 불리하다고 하여 FCC는 AT & T의 영업용 가입자요금을 크게 自由化하는 政策으로 결단을 내렸다. 이것이 공중통신사업자 시스템과 다양한 단말기기와 직접적 접속을 촉진하고, 이러한 종류 장치의 사적제조업자에 잠재성 있는 시장을 열어놓게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 判決을 기회로 자영부속장치 및 사설시스템을 일반 공중통신회선에 상호접속하는 것이 인정되고 이 分野에 있어서 競爭은 한층 진전되었다.

4) MCI 判決 (1960년)

앞의 Above 890判決은 마이크로웨이브이용자가 스스로의 시설을 설립하는 것에만 문호를 열은 것이었다. 공중통신사업자에 대한 보다 직접적인 競爭의 도전은 MCI (Microwave Communications, Inc.)가 시카고와 세인트루이스간을 잇는 마이크로웨이브 통신서비스의 영업을 FCC에 신청하였을 때 개시되었다.

이에 대해 FCC가 인가를 함에 따라 종래 AT & T 및 Western Union 전신회사에 獨占되어 온 시외전용선 分野에 競爭이 도입되게 되었다. 이러한 결정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점이 고려되었다고 할 수 있다.

- i) MCI가 신청한 서비스는 넓은 선택의 폭과 유연성을 이용자에게 주는데 기여한다.
- ii) MCI 서비스요금은 기존공중통신사업자 요금의 반 이하가 될 것으로 예상된 것.
- iii) 이런 競爭的 요소의 도입은 Western Electric의 통신기기 제조업자가 시장을 개척하여 이 分野의 기술진보를 일층 자극한다.
- iv) 競爭도입은 합리적 요금으로 적절한 서비스를 달성하도록 유효한 조정역할을 하게 되며 동시에 통신사업자간의 상호비교를 위한 기준작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기대된 것이다.

이런 인가를 계기로하여 많은 특수통신사업자에 의한 서비스제공의 신

청이 FCC에 행하여졌으며,⁴⁾ 1971년 특수통신 사업자 재정이후 이分野에 대한 신규사업자의 참여는 일정한 기술적, 재무적 기준을 만족할 것을 조건으로 自由化의 방향으로 전진하게 되었다.

또한 그 후로도 특수통신사업자의 서비스개시에 따라 단말회선의 제공문제 및 AT & T의 장거리회선과의 상호 접속문제 등에서 각 특수통신사업자와 AT & T 간에 대립이 생겼는데, 벨계 전화회사의 단말회선 임차거부에 대한 MCI의 FCC에 대한 제소(1973년) 및 AT & T에 대한 명령의 집행을 요구하는 FCC의 필라델피아 연방지방재판소에 대한 제소(1973년) 등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특수통신사업자에게 유리한 결론이 나왔다.

5) 國內衛星裁定(1972년)

1965년 ABC에 의한 TV 전용 국내위성통신시스템의 인가신청으로 시작된 국내위성통신이용문제는 얼마간 유동적이었으나, 1970년에는 競爭의으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1972년에는 復數參與政策으로 점차 競爭政策에 의한 해결이라는 방향으로 집약하고 있었다. 이分野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은 국내위성통신서비스의 개시에 따른 타통신서비스의 영향이다.

첫째, FCC가 최대의 獨立系電話會社 GTE의 자회사인 GTE Satellite사에 대해, 그 국내위성통신시스템을 GTE계 전화회사의 일반시외전화서비스에 이용하는 것을 인가(1973

년) 함으로써, 본래 AT & T의 자연적 獨占서비스로 간주되는 일반시의 전화서비스시장에도 競爭이 생길 기초가 제공된 것.

둘째, 국내위성통신시스템을 운용 개시후 3년간 전용선서비스에 이용하는 것을 FCC에 의해 금지되고 있는 AT & T는 그 기간중 자신의 지상전용선 및 디지털데이터망에 의해 다른 국내위성통신사업자와 競爭을 부득이하게 된 것이다.

이들의 동향도 결코 공중통신사업자의 자연적 獨占을 뿌리부터 뒤집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自然獨占의 적절한 범위를 어디로 해야 하는가, 競爭的인 대체 미디어간에 어떻게 하여 실행 가능하고 적절한 競爭상태를 확보할 수 있는가, 등의 중요문제가 여기에 새로이 제기된 것에 주의하여야 한다.

6) Execunet 判決(1978년)

特殊通信事業者 裁定으로 인정된 長距離電話로의 참여는 專用線에 의한 것만이었으나, MCI는 1975년에 Execunet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이 서비스에 대해서, MCI의 가입자는 통상의 電話機에서 MCI의 Execunet 回線에 접속할 수 있었다. 이것에 대해 FCC는 그것이 專用回線에 의한 신규참여만을 인정한 1971년의 特殊通信事業者 裁定에 위반된다고 判決하였다. 그러나 항소심은 1978년 判決에 의해 참여허가를 專用回線에 한정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하여 FCC 재결을 번복하였다. 이 Ex-

註

4) MCI 인가후 1년간 약 37개의 회사가 신청을 하였다.

ecunet 判決에 의해 AT & T의 競爭者가 公衆回線서비스에 참여하는 것이 인정되었다.

3. AT & T 分割

Excunet 判決이후 장거리전화서비스에서는 MCI에 이어 수개사가 참여하여 美國・전역에 네트워크를 확대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AT & T의 방해행위에 착안하여 사법성은 1974년에 AT & T의 分割을 요구하는 반트러스트소송을 제기하였다. 소송제기의 이유로

① 競爭事業者의 AT & T 地域電話回線으로의 접속조건을 AT & T 장거리부문에 대한 접속조건보다도 불리하게 설정하고 있고 ② AT & T의 長距離電話料金を 競爭者를 배제하도록 하게끔 설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후 1982년초에 AT & T는 地域電話部門의 分리를 승락하고 사법성과 동의를 성립시켰다. 1982년 9월에 재판소는 약간의 변경을 하여 양자의 동의를 승락하였다. AT & T는 수정동의심결(MFJ : Modified Final Judgement)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여받았다.

- i) AT & T의 地域電話部門을 1984년 9월까지 분리한다.
- ii) 分割된 각 地域電話會社는 AT & T의 競爭會社에 대해 1986년 9월까지 AT & T와 균등한 접속조건을 부여할 것.
- iii) AT & T는 1956년의 사법성과

동의심결에서 해방되고 非電話部門으로 진출할 수 있다.

AT & T 地域電話部門의 분리 1984년 9월에 완료되고, 7개의 地域電話會社는 地域電話의 獨占을 인정받았다.

결국 1970년대이후 FCC에 의한 規制緩和政策에 따라 1980년대 제 2차 컴퓨터조사재정 및 수정동의심결에 의한 AT & T의 分割 등의 일련의 政策은 美國의 電氣通信産業, 市場의 競爭을 촉진하고, 美國의 電氣通信業系의 양적 질적인 發展을 가져오게 하였다.

4. AT & T 分割以後 自由化

AT & T 분할 이후도 계속적인 規制緩和 조치가 이루어져 왔으며 FCC는 規制를 많이 받는 市場支配的 通信事業者인 AT & T와 BOC를 중심으로 規制緩和를 진행시켜 왔다.

한편, FCC 주도하의 연방수준의 規制완화, 競爭導入에 이어서 州수준에서도 電氣通信自由化立法을 채택하고, 競爭導入, 料金規制의 완화·철폐 등을 진전시키고 있다.

한편, 이러한 規制緩和에 이어 1986년 5월에는 제 3차 컴퓨터조사재정이 채택되었으며, 제 3차 컴퓨터조사재정은 AT & T의 分割, 情報通信技術의 보다 나은 進展과 需要의 변화라는 새로운 상황하에서 보다 실효성이 있는 競爭促進政策의 실시와 美國의 國際競爭力의 강화를 목적으로 하여 FCC가 채택한 政策이다.

〈表 2〉 第 3 次 컴퓨터裁定の 主要內容

- 1) 네트워크서비스를 기본서비스와 고도서비스로 나누고, 전자를 規制하고 후자를 非規制하는 분류방법은 계속유지한다.
- 2) 지배적 通信事業者가 제 2 차 컴퓨터재정에 의해 부과되어져 왔던 고도서비스 진출의 경우 分離子會社要件을 철폐한다.
단, 非構造的防止(non-structural safeguards)의 실시를 조건으로 한다.
- 3) 非構造的防止의 條件
 - ONA(Open Network Architecture)를 실시한다.
 - 기본서비스와 고도서비스의 會計分離를 행한다.
 - 通信網技術情報의 개시의무
 - 고객이 요구에 일치된 고객별 망이용 情報(CPNI:Customer Proprietary Network Information)의 개시의무
- 4) 기 타
Voice Mail Service 는 고도서비스로 한다.

주요한 내용은 〈表 2〉와 같다.

Ⅲ. 英國의 民營化 및 自由化 動向

英國의 電氣通信制度는 과거 7년에 걸쳐서 큰 改革이 실시되어져 왔다. 이러한 改革의 주요한 역할을 한 것은 1981년 電氣通信公社法과 그후 이것이 변하여 성립한 1984년 電氣通信法이다.

1979년말 郵便電氣通信公社(BPO)가 電氣通信서비스와 기기를 獨占의으로 제공하여 온 때부터 1988년 4월 말까지 電氣通信改革을 정리하면 〈表 3〉과 같다.

英國의 自由化政策 추진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1979년 총선거에서 정권을 획득한 보수당의 정치적 의향이다. 電氣通信産業의 自由化는 國有化되어 있는 기반산업에 競爭과 民營化를 도입하고자 하는 보수당의 政策 일환으로서 실시되어졌다.

1. 自由化政策의 特色

電氣通信分野에 있어서 英國의 自由化政策의 추진은 미국의 自由化를 규범으로 한 것이고, 美國의 競爭政策의 진전을 주로 검토한 상태에서 실시할 것이라 할 수 있다. 단,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해서는 美國과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첫째, 電氣通信事業者의 신규참여는 법률상 인정된 것이나 실제로는 시

〈表 3〉 英國電氣通信의 自由化政策

198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1년 電氣通信公社法이 성립하여 電氣通信事業은 우편사업과 분리 · C&W 의 정부소유주식 매각(1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1년 電氣通信公社法 성립 · 공중망에 접속하는 단말기의 自由化 (단계적 실시)
198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AN 일반면허 성립 · 머큐리에 개별면허 발행
198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W 의 정부소유주식 매각(2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틀차일드 교수가 BT 에 대해 RPI - 3% 의 料金規制를 실시할 것을 권고
198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소유의 BT 주식 50.2% 를 일반에게 매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4년 電氣通信法 성립 · BT, 머큐리에 면허발행 · BSGL 면허발행
198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TI 는 데이터전송을 제공하는 BT 와 IBM 의 합병회사를 불허가 · OFTEL 이 BT 와 머큐리의 통신망의 상호접속에 관한 제정을 발표
198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W 의 잔여 정부소유주식의 전부를 매각(3회) 	
198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ull 시영전화회사가 民營化되어 Kingston Communications (Hull) PLC 가 탄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 VADS Class 면허 및 신 BSGL 면허 발효

기상의 제한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英國의 自由化政策은 美國의 철저한 自由化政策보다는 완만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단계적인 自由化政策의 내용은 후술하기로 한다.

둘째, 美國에 있어서 AT & T 등에 대해 실시되고 있는 「공정보수율방

식」에 의한 規制方式을 채용하지 않고, 「소매물가지수 상승율 마이너스 3%」에 의한 방식을 채택하였다. 이 방식에서는 대상이 되는 여러 서비스의 종합가중평균이 일정의 범위 (소매물가지수 상승율 마이너스 3%)에 있게 된다면 개개의 서비스에 대한 요금인가를 요구할 필요가 없게 되기 때문에 이러

한 점에서, 規制서비스에 대해 요금인가를 필요로 하는 美國의 경우와 비교하여, 規制는 완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세째, 英國政府는 情報技術分野에 있어서 세계적인 競爭상황에서 BT에 대해 英國의 견인차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고, BT 자체도 이 시기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과감한 업무활동을 행하고 있다. 한편, 英國에서 BT의 地域分割의 논의가 조기에 없어진 것도 BT에 대한 이러한 역할 기대가 있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이 점에서 AT & T에 대해 어디까지나 복수의 電氣通信事業者, 獨占기업자의 하나로서의 지위 밖에 인정하지 않고 모든 점에서 평등하게 취급을 하는 美國의 政策과 다르다. 이처럼 英國의 通信政策은 정보산업의 견인차로서의 BT의 육성과 電氣通信면에서의 競爭추진이라는 2가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2. 段階的인 自由化政策

英國政府는 通信市場의 活性化를 도모하기 위해 1982년에 머큐리에 電氣通信서비스의 제공을 인정하는 면허를 부여하고 英國電氣通信公社의 獨占에 종지부를 찍었다. 런던등의 주요도시에서는 長距離通信만이 아니고 市内通信에서도 競爭이 시작되고 있다.

競爭化에 있어서 英國政府가 의도한 것은 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아니고

완만하고 단계적으로 확실히 競爭을 추진하는 것이다.

英國政府는 BT를 약체화시키지 않고 電氣通信서비스를 競爭化할 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새로운 전국적인 通信事業者로서 인가된 머큐리를 육성하여 自由化政策을 성공시키려는 과제도 있었다. 이러한 과제에 있어서 결국은 다른 通信事業者에 의해 BT와 머큐리가 취급하는 통화량이 현저히 감소되지 않게 할 어떠한 대책수립을 강구할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單純再販賣禁止이고 2社 獨占體制의 유지이다.

政府는 적어도 1989년 7월말까지는 單純再販賣를 허가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것은 BT 회선이용의 대폭적인 自由化를 실시하는 반면, 머큐리 외에 VAN 등의 제 3의 事業者가 電話와 텔렉스 등의 기본서비스시장에서 BT와 직접 競爭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 방침에서는 기본서비스시장으로의 참여를 제한하고, BT의 財務狀況을 안정시키는 것에 의해 BT에 국내 모든 이용자에게 電話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유니버설서비스와 緊急電話, 公衆電話 등의 불채산서비스를 확보하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 기한 제한인 1989년 7월 이후에도 單純再販賣 금지를 政策的으로 계속 유지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Carsberg OFTEL 廳長은 이미 유사한 單純再販賣를 허가할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것은 데이타통신에 대해서는 이미 한정적으로

再販賣를 허가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디지털망에서는 음성통신과 데이터통신을 구별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어렵게 되고 있는 것과 이미單純再販賣를 금지할 근거가 되는 경제상의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BT와 머큐리에 의한 2사獨占體制는 1983년 11월에 Baker 정보기술장관이 의회에서 그 의향을 표명한 것에 기원을 두고 있다. 케이블, 단파, 위성파 관계있는 固定通信網에 의한 기본서비스에 대해서는 BT와 머큐리에 의한 2社獨占體制를 최저 7년간 유지할 것이며, 결국 1990년 11월 이후에 2社獨占體制를 어떻게 취급하는가에 대해서 검토를 개시할 것이다.

이러한 2社獨占政策에 대해서는 신규참여를 제한하고 競爭의 촉진과 연결되지 않는 것으로서 기본서비스시장에서의 2社獨占政策을 비판하는 의견도 있다. 이것에 대해, OFTEL은 단기간에 복수의 競爭者를 만드는 것은 전체의 신규참여자를 약하게 하고, 支配的 事業者를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하기 때문에 문호를 대폭 확대하기 전에 支配的 事業者(BT)에 마주서는 新規競爭事業者(머큐리)에게 기반을 확고히 구축시키는 것이 효과적인 競爭이라고 하고 있다.

기본시장만이 아닌 셀방식 自動車電話의 CATV에서도 競爭을 제한하는 政策이 채택되고 있다. 셀방식 自動車電話에서는 Racal Vodafone과

Telecom Securicor(상표는 Cellent)의 2社가 獨占하고 있다. CATV에서는 시스템을 이용하는 電話서비스의 제공은 BT가 머큐리와 운용에 관한 협정이 성립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CATV 會社는 현재 電話서비스에 관해서 이 2社에 대해 市内電話網으로서의 CATV網을 제공할 뿐이다. OFTEL은 시내서비스分野에서는 競爭이 충분하지 않다고 고려하고, 1990년 이후는 BT와 머큐리외에 CATV업자에도 시내서비스分野의 참여를 인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3. BT의 民營化

1984년 4월에 英國電氣通信株式會社가 탄생하고, 1984년 8월 BT면허 발효를 거쳐 公社에서 재산, 권리를 승계하였다. 1984년 12월에 정부가 보유하는 BT주식의 50.2%가 일반에게 시장매각되고 BT의 民營化가 달성되었다. 英國政府는 앞으로 1~2년 이내에 나머지 주식을 매각할 의향이 있다. 이것은 BT가 정부의 감독, 지휘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이 事業運營을 실시할 수 있는 組織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BT는 民營化에 의해서 자금달성의 큰 제약이 되었던 공적자금차입한도 범위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차입하고 投資할 수 있게 되었다.

4. 獨立의인 規制機關

民營化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일상의 정부간섭을 피할 필요성이 있다는 관점에서, 1984년 電氣通信法에 기초하여 독립된 規制機關으로서 電氣通信廳(Office of Telecommunication : OFTEL)을 설치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美國의 政策과 차이가 있다. 즉, 美國에 있어서는 FCC 같은 큰 권한과 조직을 갖는 規制機關이지만 英國에 있어서는 OFTEL⁵⁾은 通信事業者의 公正競争, 公正價格의 보증을 직무로 하는 한정된 권한을 갖고 있고 通信政策의 결정을 하는 주된 권한은 貿易産業省에 있다. 또한 OFTEL은 정부가 발행한 通信免許의 시행상황을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수정의 수속을 개시할 임무도 지고 있다.

한편, OFTEL이라는 新規制機關의 설립은 競争의 導入과 規制의 잔존과의 조화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기관으로서의 중요한 특징을 갖고 있다. OFTEL은 反競争的 관행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通信産業에 있어서 競争政策上의 일부의 문제는 公正去來廳이 아닌 OFTEL에 의해 처리되고 있다.

OFTEL의 설립은 自然獨占型 産業인 通信産業에 民營化政策이 도입됨에 있어서 規制의 전면적 철폐와 競争의 즉시적 기능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다. 즉, OFTEL과 같은 새로운 規制機關에 의해 規制의 존속을 인정하면서도 競争의 環境을 창출하는 것이 최선의 방

책이라는 것이다.

IV. 日本の 民營化 및 自由化 動向

1952년에 日本電信電話公社가 설립되고, 1953년에 國際電信電話株式會社(KDD)가 발족한 이후, 1985년 4월에 이르기까지 日本의 電信·電話에 관한 서비스의 제공은 2社에 의한 獨占이 유지되었다. 한편 데이터통신을 위한 서비스에 대해서도 公衆性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獨占이 계속되었다. 이러한 獨占의 유지는 1953년에 제정된 公衆電氣通信法에 의한 것이었다. 日本의 電氣通信 自由化政策은 점차적인 회선개방을 통한 自由化와 NTT 民營化를 통한 전면적인 自由化로 특징지을 수 있다.

따라서 이후에서는 회선개방을 통한 自由化와 民營化政策으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日本의 電氣通信 自由化推移는 <表 4>와 같다.

1. 回線開放을 통한 自由化

1) 第 1 次 自由化

데이터통신기술에 기초한 데이터통신시스템구축이 진행됨에 따라 公衆電氣通信法 가운데에서도 특히 데이터통신회선의 이용제도에 관한 개정이 이루어졌다.

즉, 은행 온라인·시스템과 기업내 데이터통신시스템의 실현을 앞두고 1963년 專用線의 이용을 가능하게 한

註
5) 88년초 현재 OFTEL은 인원 100명, 예산은 390만 파운드 정도임.

〈表 4〉 日本의 電氣通信 自由化의 推移

년 도	정 책	내 용
1952		일본전신전화공사 설립
1953		국제전신전화주식회사 설립, 공중전기통신법 제정
1963		데이터전송서비스 개시→전용선 (본인사용)
1971	제 1 차 회선개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터통신이용제도의 제정 — 한정된 범위에서 공동사용, 타인사용 인정 — 공중망으로 데이터통신 가능
1976	제 1 차 회선개방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컴퓨터 네트워크 구성허용 — 복수컴퓨터의 사용허가 — 단말간 통신허용
1983	제 2 차 회선개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터통신자유화 • 중소기업자 대상의 업무용 통신매개를 잠정적으로 허용(중소기업 VAN)
1985	통신의 자유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신개혁 3 법시행 • 모든 분야에 민간기업 참여허용 • NTT의 민영화(일본전신전화주식회사 발족)

데이터전송서비스가 개시되었고, 專用線의 이용에 대해서는 「本人使用」이라는 형태가 이루어지고 專用線을 차입하는 본인(企業)이 전용적으로 사용하는 데이터통신업무만 專用線의 이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런데 기업간 온라인시스템이 구성되는 경우에는 所有者가 다른 컴퓨

터사이에 데이터통신회선을 설치하고 이 회선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이용형태가 필요하게 된다. 또한 온라인 계산서비스를 행하기 위해서는 需要가 많은 地域에 通信의 集線裝置를 설치하여, 중앙컴퓨터와의 회선을 불특정다수(他人)가 사용하는 이용형태가 經濟的이며 필요하게 된다. 동시에 계

산서비스의 이용자와 集線裝置 사이의 回線이 專用線이 아니라 수시로 접속(Access)될 수 있는 公衆電話網이 유리하게 된다. 이 경우에 이용자의 중앙컴퓨터를 접속하는 회선이 일부는 公衆電話網이고 일부는 데이터통신 專用回線이 되어 公衆回線과 專用回線과의 相互接續을 행하는 이용형태가 발생하게 된다.

이상과 같은 「共同使用」, 「他人使用」 또는 「公衆網과 專用回線과의 相互接續의 이용형태」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1971년 公衆通信法の 개정(第1次 回線開放)이 이루어졌다. 즉, 전신·전화 이외에도 통신회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특정통신회선 및 가입전신·전화회선의 이용 제약을 완화함과 동시에 새로이 제공하는 데이터통신서비스의 범제화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개정으로 데이터통신 이용 제도가 제정되고, 한정된 범위에서의 「共同使用」과 「他人使用」이 인정되고, 「相互接續」에 대해서는 신청에 의해 인가될 여지를 만들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한정된 범위에서의 自由化이고 전용적 업무에 필수적인 通信의 형태를 초월하는 이용에 대해서는 規制되고 이것이 개별적으로 심사되었다.

특히 일반적인 메시지교환에 대해서는 電電公社와 KDD가 행하는 公衆通信서비스의 이용이 침해될 것을 우려하여 강한 規制를 남겨 놓았다.

2) 第2次 自由化

한정된 범위에서의 第1次 回線開放

은 企業의 情報化 진전과 高度化·多樣化된 情報通信技術에 일치되는 電氣通信의 운용이 어려워짐에 따라 1982년 10월 公衆電氣通信法을 개정하고 종래의 「共同使用」, 「他人使用」 및 「相互接續」을 원칙적으로 自由化하는 데이터통신이용에 관한 自由化(第2次 回線開放) 조치를 취하였다. 즉, 데이터처리를 위한 회선이용의 完全自由化이다. 이것은 종래, 컴퓨터마다 고려되어진 데이터통신을 시스템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한 것이고, 데이터처리를 목적으로 타인의 통신을 중개하지 않는 경우, 공중회선의 중간에 특정회선을 접속하지 않는다면 자유로운 회선의 이용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또한 민간에 VAN 사업을 개방할 목적으로 「부가가치데이터전송업무에 관한 법률안」이 우정성에 의해 입안되었으나, 성립하지 못하고, 잠정조치로서 우정성령에 의해 소위 「中小企業 VAN」제도가 창설되었다.

「中小企業 VAN」은 데이터통신을 사용한 업무의 情報化로 규모의 經濟的 메리트를 받을 수 없는 中小企業의 情報化를 진행시키기 위한 잠정시책이었고 변칙적이거나 민간에게 VAN 사업의 길을 개방한 것이 되었다.

3) 第3次 自由化

구미제국에서의 電氣通信事業 競爭原理導入, 각종 通信事業者의 참여 등으로 보다 경제적이고 자유로운 電氣通信政策을 실현하는 것과 對外影響

등을 고려하여 日本에서도 이러한 방향으로 향하는 것이 情報通信을 중심으로 한 經濟의 활성화, 국제화, 産業의 소프트화에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졌다. 따라서 이러한 흐름속에서 1985년 4월 電氣通信事業法, 日本電信電話株式會社法등의 시행으로 通信의 自由化(第 3次 回線開放)를 이루었다. 이에 公衆電氣通信法이 폐지되고 電電公社, KDD 에 의한 獨占的 電氣通信은 競爭에 의한 電氣通信으로 변하게 되었다.

電氣通信 自由化를 목적으로 한 電氣通信事業法은 「경제적이고 자유로운 通信」, 「情報通信技術의 진보에 따른 고도하고 다양한 通信」, 「新規通信事業者의 참여에 의한 民間活力」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電話에서 데이터통신에 이르는 넓은 分野에 대해 신규참여를 인정함과 동시에 국내만이 아니라 국제통신까지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되어졌다. 公衆電氣通信法の 폐지에 따라서 종래 존재한 회선이용제도에 관한 規制는 폐지되고 회선의 이용방법에 관해서는 전면적으로 自由化되었다.

이러한 電氣通信事業의 전면적인 개방으로 인한 잇점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기대하였다.

- i) 신규참여사업자는, 기존사업자가 충분히 대응할 수 없는 分野에 세밀히 대응하고 신규수요를 적극적으로 개척한다.
- ii) 競爭原理導入에 의해 電氣通信

事業 전체의 효율적 운영의 자극을 가져온다.

- iii) 電氣通信料金の 합리적 요금체계의 저렴화가 행해진다.

2. NTT의 民營化

日本電信電話公社가 1952년 설립된 이후 대폭적인 電話需要의 신장에 대응하고, 新技術의 開發, 導入을 도모하면서, 電話의 積滯解消(1978년)와 全國自動即時通信化(1979년)의 2대 목표를 달성하였다. 한편, 경영업적은 양호하였으나 서서히 公社形態, 完全獨占에 따르는 폐해도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1982년 臨時行政調査會는 「行政改革에 관한 第 3次 答申」 가운데에서, 電電公社의 改革에 대해 앞으로 電電公社가 국민필수의 電氣通信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에서 공급하고 장래 기술개발력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①經營形態를 民營化의 방향으로 改革하고, ②競爭構造를 조성하여 獨占의 폐해를 제거하고, ③규모의 적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제언을 하였다.

이러한 臨時行政調査會 答申에 따라 정부내에서 電電公社의 民營化에 대해 검토를 행하여 1984년 12월 20일 日本電信電話株式會社法이 성립되고, 1985년 4월 1일 電電公社가 民營化된 日本電信電話株式會社(NTT)가 발족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公社는 新會社(NTT)에 대하여 전재산을 現物出資

하고 現物出資에 대한 대가로서 NTT 주식 1,560만주(액면가 7,800억엔)를 公社가 취득하였다. 그리고 公社는 전 주식을 정부에 양도하고 정부보유의 무가 있는 1/2은 産業投資特別會計로 귀속되었고 나머지 주식을 점차 매각 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러한 매각방침에 대하여 '86년, '87년도 총매각수는 총주식의 1/4에 해당되었다.

3. 最近의 動向

1) 데이터 通信事業本부의 分難

NTT 내에 데이터통신본부가 발족한 것은 1967년이었고, 이후 우여곡절을 거쳐 1988년 7월 1일 NTT 데이터통신(주)로 분리하여 발족하였다.⁶⁾

NTT 내의 컴퓨터·시스템개발, 제 공부문이 탄생한 것은 이질적인 것으로 정보처리서비스업자단체에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데이터통신본부의 不公正性을 언급하였다. 이런 불공정성이라는 것은 과대한 요금수입의 전화사업에서 데이터통신의 적자를 메꾸어 줌에 따라 시장에서 競爭하고 있는 것은 데이터통신본부가 아니라 전체 NTT 라는 것이다.

이러한 데이터통신본부의 분명하지 못한 존재는 항시 분리론이 생기게 하는 요인이 되어 왔다.

1982년 제 2차 임시행정조사회 답신에서 분리론이 제기되었으나, 電氣通信事業의 自由化, 電電公社의 民營化 작업으로 미루어지다, 1985년 9월 우정대신이 전기통신심의회에 「데이터

通信의 今後의 發展方策」에 대한 자문을 구한 이후 구체적으로 진행되었다.

한편, VAN 업계에서는 NTT의 실질적인 지배의 배제, 민간업자가 競爭가능한 정도까지의 분할을 요구하였으나, NTT는 다음과 같은 公正競爭確保를 위한 조건을 내세우고 NTT 100% 출자, 자본금 100억엔, 종업원 6,800명 규모로 NTT 데이터통신(주)를 발족시켰다.

- i) NTT와 공동자재조달을 행하지 않음.
- ii) NTT와 신회사간의 거래에 있어서 NTT에서 원조를 행하지 않고 제 3자와 동등한 거래조건에 의한다.
- iii) 회선을 무차별하게 공정히 제공한다.
- iv) NTT의 출자비율에 대해서는 신회사주식의 상장 등의 기회를 통하여 출자비율을 저하시킨다.
- v) NTT에서 신회사로 사원의 이동은 轉籍으로 한다.

2) NTT 分割論議

우정성은 최근 NTT의 경영형태에 대해 제고하기 시작하였다.

NTT의 경영형태문제에 대해서 우정성은 1988년 3월 전기통신심의회에 「地域分割을 주장한 임시행정조사회 답신을 근거로 한 NTT의 형태변경」을 자문하였고, 電氣通信審議會는 이것을 받아들여 電氣通信事業部會에 신설한 第 3小委員會에서 구체적으로

註

6) 데이터통신사업본부의 분리의 자세한 사항은 코히비트비아, 1988. 8. p. 12 ~43 참조.

검토하고 있다. 따라서 우정성은 1년 후 결론이 나와 분할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NTT 법을 개정할 것이다.

소위원회는 NTT 민영화 후 4년을 맞이한 電氣通信市場에서의 「公正하고 有効한 競爭狀態」를 실현시키고, 전화요금인하 등 이용자의 잇점을 확대한다고 하는 관점에서 NTT의 형태를 검토하고 있다.

분할의 시비가 과제로 된 것은 신전전 등이 활발히 시장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NTT가 압도적으로 강한 면을 발휘하고 있고, 競爭狀態가 쉽사리 실현되지 않다는 데에 있다.

검토과제 가운데 地域分割⁷⁾은 장거리전화회사와 지방전화회사로 나누는 것으로 주로 제 2전전 등 장거리계 신전전과의 競爭條件의 차이를 없애는 것이 목적이다. 현재는 NTT가 장거리전화망과 시내전화망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장거리계 신전전은 시내회선을 NTT에게 차입하고 있고, 서비스와 요금설정 등에서 불리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우정성은 보고 있다.

한편, 機能分割은 전화기 등의 판매 부문과 보수부문 등을 통신사업에서 분리하고, 통신사업을 일반전화, 포켓벨, 자동차전화 등 전화서비스별로 분리하는 것으로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별 機能分割이 地域分割에 비해 수익, 사원수의 규모에서 보더라도 NTT에 영향을 적게 미칠 것으로 보는 경향이 많아서 현재는 서

비스별 분할로 나아가는 움직임이 선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V. 結 論

이상과 같은 先進國의 민영화, 自由化, 競爭原理導入政策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이 電氣通信政策에 있어서의 흐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민영화(Privatisation)란 정부가 갖는 주식을 적어도 과반수 이상 민간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自由化(Liberalization)는 이제까지 法的獨占의 상황에 놓여 있던 영역에 신규참여를 인정하는 조치로서 競爭을 도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自由化는 경제활동 특히 기업활동에 대해 공적으로(국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에 의해) 개입하여 제한을 가하고 있던 시장을 완화시킨다는 의미의 規制緩和(Deregulation)와도 통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에서 自由化는 規制緩和를 의미한다고 하여 自由化되면 規制는 필요없는 것으로 인식되어질 수 있다. 왜냐하면 規制는 獨占力 남용을 제거하는데 필요하며, 자유화로 競爭이 도입되면 계속적인 規制가 필요없게 된다는 논리를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自由化가 이루어져도 獨占力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으므로 계속적인 規制는 필요한 것이며, 競爭은 모든 분야에 있어서 효과적일 수는 없다. 어떤 競爭者가 獨占事業을 계속할 때 規制는 競爭을 공정

註

7) 地域分割의 논의에 대해서는 電電公社 經營形態問題等 調査研究會事務局, 國內公衆電氣通信事業의 經營形態等に關する研究, 1982. 참조.

하고, 효율적이게 하는데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規制는 競争을 촉진시키는데 필요할 것이다.

한편, 民營化의 개념에 市場原理를 도입하는 競争促進 즉 自由化라는 의미도 있기는 하지만 民營化와 自由化는 명확히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일

반적으로 民營化만으로는 自由化를 행함에 불충분하다는 공통된 인식이 있고 民營化는 自由化를 위해 필요하며 自由化를 이루지 않는다면 시장을 개방하여 효과적인 競争을 실현하려고 해도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參 考 文 獻

1. 吳聖伯, 「英國 및 日本의 電氣通信事業 民營化 事例調査研究」, 通信政策研究所, 1987.
2. 公正取引委員會事務局經濟部調査課 編, 「新しい情報通信と獨占禁止政策」, 1985.
3. 蠟山昌一, 淺野正一郎, 上野光平 編, 「サービス貿易摩擦」, 日本經濟新聞社, 1986.
4. 瀧川敏明, 「米國における電氣通信業の規制緩和動向」, 公正取引 No. 426, 1986. 4.
5. 佐佐木 弘, 「現代公益企業論」, 白挑書房, 1981.
6. 野村宗訓, 「イギリスにおける民營化問題, 公正取引」, No. 449, 1988. 3.
7. 情報通信總合研究所, 「情報通信ハンドブック '87年度版」, NTT 出版, 1987.
8. 佐賀健二, 「歐米における電氣通信政策の最新動向」, 國際電氣通信連合 日本, 1987. 12.
9. コンピュートピア, 1988年 8月號.
10. 日本經濟新聞, 1988. 7. 16.
11. Alfred E. Kahn, 「The Economics of Regulation : Principles and Institutions, Vol 2」, John Wiley & Sons, Inc., 1971.